1960年代,19

해외 영업 계약서

주식회사 아토 (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Shimizu Taito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의 "해외 영업 업무 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 목적

"갑"이 소유하고 있는 Refurbish사업의 해외 기술 영업을 "을"이 담당하며, "을"은 "갑"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제 2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유효 기간으로 하며, 양측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3조 : 수수료 지급

1. "갑"은 "을"의 해외 기술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의 50 %를 매 분기 말에 "을'에게 지급한다. 단, 국내 세무 규정에 의거 소정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을"의 업무 도중 발생한 경비는 나중에 별도 혐의한다.

제 4조 : 담당 업무

- 1. Refurbish 부문의 해외 기술 영업 Consultant (일본, 중국, 대만)
- 2. "갑"이 요청∜하는 관련 제반 업무

제 5조 : 계약 해지

- 1. "갑"과 "을"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요청한 후 동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상대방에 대해서 명백하게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 2)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로 불이익을 가져올 경우
- 2. "갑"의 사업 종료로 인한 "을"의 담당 업무 유지 필요성이 소멸할 경우 단, 사업 종료 3개월 전에 통보 하여야 하며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 3. "갑"이 "을"에 대한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 대해 계약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조 : 성실의 의무

"을"은 제 1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최대한의 성실을 갖고 위탁 업무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득한 "갑"의 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 7조 : 기타

본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이상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4부 (한국어, 일본어) 작성 하여 "갑", "을"의 서명 각인 후 각 2통 (한국어, 일본어)씩 보유 한다.

2003년 1월 20일

갑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주식회사 아 토

대표이사 문 상 영 化 기 主义 - フノル 51/24

을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2

清水 泰北青

海外営業契約書

株式会社atto (以下 "甲"という) と 清水 泰斗 (英文Shimizu Taito、以下 "乙"という) とは "海外営業業務委託"に関して次の通り契約を締結する。

第 1条 :目的

甲が所有しているリファービシ事業の海外技術事業を乙が担当し、乙は甲が必要とする 情報と諮問等を提供する。

第 2条 : 契約期間

本契約の有効期間は2003年1月1日から2003年12月31日までの1年を有効期間にし、両側の別途の要求がない限り、契約は1年ずつ自動延長することにする。

第 3条 : 手数料支給

- 1. 甲は乙の海外技術営業により、発生した利益金の50%を毎分基の末に乙へ支給する。 但し、国内税務規定に基ずいて所定の所得税及び住民税を控除した金閣を支給する。
- 2. 乙の業務途中に発生した経費は後に別途協議する。

第 4条 : 担当業務

- 1. リファービシ部門の海外技術営業Consultant (日本、中国、台湾)
- 2. 甲が要請する関連業務

第 5条 : 契約解約

- 1. 甲と乙は次の各号の場合、30日の期間を決めて相手にその履行を要求して同期間内に相手が履行しない場合、本契約を解約することができる。
 - 1) 相手に対して明白な不当行為をした場合
 - 2) 相手に対して不利益を与えた場合
- 2. 甲の事業終了によって乙の担当業務を維持する必要性がなくなった場合。 但し、事業終了3ヶ月前に協議の上、 双方の合意で決定する。
- 3. 甲が乙について契約条件を違反した場合, 乙は甲に契約の破棄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第 6条 : 誠実の義務

乙は第 1条で決まった業務を修行する為、最大限に誠実を持って行なわなければな ない。

また、業務上取得した甲の企業秘密について保安を維持する義務がある。

第 9条 (その他)

本契約で決めていない事項は双方の合意で決定する。 以上契約の証として本書4通(韓国語、日本語)を作成し、甲、乙双方記名捺印の上、 各自2通(韓国語、日本語)を所有するものとする。

2003年1月20日

甲: 大韓民國 京畿道 始興市 征往洞 1263-1

株式會社 atto

取締役文常榮べてプシー

乙 : 京畿道 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5-2

